



제 1008 호

2011년 10월 28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규칙 제785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2
일부 개정 규칙

공 고

- 공고 제2011- 1320호 물품(하나로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찰 공고 11
- 공고 제2011- 132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
정규칙(안) 입법 예고 공고 14
- 공고 제2011- 13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99호선,소로2-30호
선)사업 실시계획 정정 공고 23
- 공고 제2011- 1337호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공
고 26

고 시

- 고시 제2011- 87호 도시계획시설(도로:구월동 소3-3호선)사업 실시
계획인가(변경)고시 27

회 람								
----------------	--	--	--	--	--	--	--	--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1년 10월 28일

남동구 규칙 제78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중 “징계양정”을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사건을”을 “징계등 사

건을”로 “금품수수, 음주운전사건 비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을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사건 비위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의결을”을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로 한다.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및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을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동일”을 “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의결을”은 “징계의결등을”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 중 “징계사건”을 각각 “징계등 사건”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요구된 자가”를 “요구된 사람에게”로,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요구된 자의”를 “요구된 사람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0이상의”를 “둘 이상의”로, “중한”을 “무거운”으로, “위의”

를 “1단계 위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에 대하여”로,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4조에 따른”으로, “의결을”을 “징계의결이”로, “당해”를 “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징계의결서의”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 의결서의”를 “징계등 의결서의”로 한다.

제7조 제목 중 “구청장”을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은”을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으로, “징계사건을”을 “징계등 사건을”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2에 따라”로,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근무성적·뇌우치는 정도, 기타의”를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뇌우치는 정도, 그 밖에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 4와 별표 5를 각각 적용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표 4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3을 별표 5로 하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조 관련 별표 1의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정 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비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7조 관련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처리기준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성매매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1의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1배

※ 비고

-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4】 ≪= 당초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제2조 및 제7조 관련)

구 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경징계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300만원 이상	중징계					

※ 금품 등 수수액이 소액이라도 2회 이상 및 정기·상습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직무와 관련한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은 이 규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를 준용 한다.

【별표 5】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7조 관련)

유 형 별	처리기준	비 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경징계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중징계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 및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 신설(2010. 3. 22)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의 개정(2010. 6. 15)에 따라 징계부가금의 신설 및 공무원 징계기준의 비위 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강화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함

□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및 의결근거 신설 (제2조제1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추가 (제2조제2항)
- 음주운전으로 대한 징계 의결 요구기준 강화 (별표5)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 1320호

물품(하나로통합관제시스템구축)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건 명 : 하나로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남동경찰서 112신고센터)
 나. 물 품 내 역 : 지방서 참조
 다. 기 초 금 액 : 금100,855,310원(금일억팔십오천삼백일십원)
 마. 납 품 기 한 : [계약일로부터 45일](#)
 바. 설 치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7-2 (남동경찰서 2층 치안상황실)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11. 10. 26\(수\) 10:00 ~ 2011. 11. 2\(수\)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11. 11. 2\(수\)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자. 발주부서 및 담당자 : [총무과 문석의 \(☎032-453-2202\)](#)
 ※ 투찰 전 반드시 지방서 등에 관하여 숙지 확인하시고 도서 세부목록 및
 수량 등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확인하신 후 투찰하
 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
 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
 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자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 약속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같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pm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일한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 및 물품구매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용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관련법규등 당 입찰에필요한 모든 사항등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 실시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행정 제재 조치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계약체결 대상이므로 낙찰자는 우리구에서 송신한 계약서 초안에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물품내역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032-453-2202 문석의)**로 문의하여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참여하시고 입찰에 관한 문의는 **재무과(032-453-2266 최현철)**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1. 10.

인천광역시남동구경리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132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 10. 26.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이 개정(2011. 8. 22개정, 8. 24 시행)됨에 따라 기능 10급의 폐지와 지방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을 운용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기능10급의 폐지

- 조정인원 : 기능10급 정원 5명 ➡ 기능7급 1명, 기능8급 4명으로 조정
- 조정기관 : 본청 1명, 동 4명

나. 현원없는 사무기능9급 조정

- 조정인원 : 기능사무9급 1명 ➡ 기능사무8급 1명
- 조정기관 : 의회사무국

다.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 전환인원 : 총 19명(기능7급 7명, 8급 12명 ➡ 행정7급 7명, 8급 12명)
- 조정기관 : 본청(전략, 아동, 청소, 환경, 정보, 재무<2명>), 의회사무국, 동(구월1, 구월4, 간석1, 간석3, 간석4, 만수1, 만수2, 만수3, 장수

서창, 논현2, 논현고잔)

라. 규칙개정 주요사항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안 별표)

기관별 직급별	현 행				기관별 직급별	개 정 안			
	총계	본청	의회	동		총계	본청	의회	동
총 계	780	497	19	200	“변 동 없 음”				
일반직계	697	454	13	170	일반직계	716	461	14	181
7급소계	209	143	3	49	7급소계	216	146	3	53
행 정	102	56	3	39	행 정	109	59	3	43
8급소계	209	127	1	63	8급소계	221	131	2	70
행 정	109	62	1	44	행 정	121	66	2	51
기능직계	79	39	6	30	기능직계	60	32	5	19
7급소계	23	15	2	4	7급소계	17	10	2	3
기 계	1	1			기 계	2	2		
사무·조무	8	7		1	사무·조무	1	1		0
8급소계	35	10	3	21	8급소계	28	9	3	15
운 전	13			13	운 전	15			15
사무·조무	16	7	1	8	사무·조무	7	6	1	0
9급소계	11	8	1	1	9급소계	10	8		1
사무·조무	8	7	1		사무·조무	7	7		
10급소계	5	1		4					
기 계	1	1							
운 전	2			2					
사무·조무	2			2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52, FAX 453-20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별첨

※ 이 규칙(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1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기능10급 폐지와 지방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례 개정 후속조치로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
 - 기능10급 5명(기계1, 운전2, 사무·조무2)
 - ⇒ 기능7급 1명(기계), 기능8급 4명(운전2, 사무·조무2)으로 조정
-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 기능7급 7명, 기능8급 12명 감소
 - ⇒ 행정7급 7명, 행정8급 12명 증가(총 정원 변동없음)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 「지방공무원법」 제17조제2항제7호(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경력경쟁임용 요건)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으로 발생하는 기능직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사 업 소	출 장 소	동
총 계	780	497	19	42	9	13	200
일반직 계	716	461	14	39	9	12	181
7급 소계	216	146	3	8	2	4	53
행 정	109	59	3		2	2	43
8급 소계	221	131	2	14		4	70
행 정	121	66	2	1		1	51
기능직 계	60	32	5	3		1	19
7급 소계	17	10	2	1		1	3
기 계	2	2					
사무·조무	1	1					
8급 소계	28	9	3	1			15
운 전	15						15
사무·조무	7	6	1				
9급 소계	10	8		1			1
운 전	3	1		1			1
사무·조무	7	7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별 표】							
기관별 직급별	현 행							기관별 직급별	개 정 안						
	총계	본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동		총계	본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동
총 계	780	497	19	42	9	13	200	“변 동 없 음”							
일반직계	697	454	13	39	9	12	170	일반직계	716	462	14	39	9	12	181
7급소계	209	143	3	8	2	4	49	7급소계	216	146	3	8	2	4	53
행 정	102	56	3		2	2	39	행 정	109	59	3		2	2	43
8급소계	209	127	1	14		4	63	8급소계	221	131	2	14		4	70
행 정	109	62	1	1		1	44	행 정	121	66	2	1		1	51
9급소계	61	35		3	3		20								
기능직계	79	39	6	3		1	30	기능직계	60	32	5	3		1	19
6급소계	5	5													
7급소계	23	15	2	1		1	4	7급소계	17	10	2	1		1	3
기 계	1	1						기 계	2	2					
사 무	2	1	1												
사무조무	8	7					1	사무조무	1	1					0
8급소계	35	10	3	1			21	8급소계	28	9	3	1			15
운 전	13						13	운 전	15						15
사 무	2	1	1												
사무조무	16	7	1				8	사무조무	7	6	1				0
9급소계	11	8	1	1			1	9급소계	10	8	0	1			1
사무조무	8	7	1					사무조무	7	7	0				
10급소계	5	1					4								
기 계	1	1													
운 전	2						2								
사무조무	2						2								

※ 조정되는 기관과 직급·직렬만 표시

[별지]

○ 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사 업 소	출 장 소	동
총 계	780	497	19	42	9	13	200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716	461	14	39	9	12	181
3급 소계	1	1					
행 정	1	1					
4급 소계	5	3	1	1			
행 정	3	2	1				
기 술	2	1		1			
5급 소계	52	24	2	5	1	1	19
행 정	35	17	2		1[1]	1	14
의 무	4			4[2]			
시 설	3	3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1	1					
행정·녹지·시설	3	1					2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공업·환경	1						1
6급 소계	160	121	6	8	3	3	19
행 정	92	64[3]	6		3	2	17
세 무	5	5					
전 산	1	1					
사회복지	4	4					
공 업	1	1					
녹 지	2	2					
보 건	3	2		1			
환 경	1	1					
시 설	14	14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5	5					
행정·사회복지	9	7					2
행정·공업	2	2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4	4					
녹지·시설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2			2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공업·환경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약무·간호	1			1			
7급 소계	216	146	3	8	2	4	53
행 정	109	59	3		2	2	43
세 무	24	24					
전 산	3	3					
사회복지	18	8					10
공 업	5	5					
농 업	1	1					
녹 지	3	3					
해양수산	1	1					
보 건	6	5		1			
의료기술	1			1			
간 호	5			5			
환 경	7	7					
시 설	29	27				2	
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1	1					
농업·수의	1	1					
보건·약무	1			1			
8급 소계	221	131	2	14		4	70
행 정	121	66	2	1		1	51
세 무	11	11					
전 산	3	3					
사회복지	26	8					18
공 업	6	5				1	
농 업	2	2					
녹 지	6	5				1	
해양수산	1	1					
보 건	9	6		3			
의료기술	6			6			
간 호	3			3			
환 경	5	4				1	
시 설	17	17					
방송통신	2	2					
행정·사회복지	2	1					1
보건·식품위생	1			1			
9급 소계	61	35		3	3		20
행 정	22	5					17
세 무	4	4					

전 산	2	2					
사회복지	2						2
공 업	2	2					
녹 지	3	3					
보 건	3			3			
환 경	3	3					
시 설	12	12					
행정·사회복지	5	4					1
무대장치사 (계약직)	1				1		
조명기사(계약직)	1				1		
음향기사(계약직)	1				1		
별정직 계	3	3					
6급 상당 소계	1	1					
비서실장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8급 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기능직 계	60	32	5	3		1	19
6급 소계	5	5					
전 기	1	1					
기 계	1	1					
운 전	2	2					
사무·조무	1	1					
7급 소계	17	10	2	1		1	3
건 축	1	1					
전화상담	1	1					
전 기	1	1					
기 계	2	2					
운 전	9	3	1	1		1	3
사 무	2	1	1				
사무·조무	1	1					
8급 소계	28	9	3	1			15
기 계	1		1				
운 전	15						15
사 무	2	1	1				
간호조무	1			1			
기계·운전	2	2					
사무·조무	7	6	1				
9급 소계	10	8		1			1
운 전	3	1		1			1
사무·조무	7	7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13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2-199호선, 소로2-30호선)사업실시계획 정정 공고

남동구 제2011-1298호(2011.10.21.)로 공고된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2-199호선, 소로2-30호선)사업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명세를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1. 10. 28.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807-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2-199호선, 소로2-30호선)

○ 명 칭 : 장수동 장수로(중로2-199호선) 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중로2-199호선 : B=3m(당초 15m→18m로 도로 확장), L=50m

○ 소로2- 30호선 : A=6㎡(도로모퉁이 확장 면적)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12.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정정) : 「별첨」

7.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별첨」

□ 용지조서

번 호	소 재 지			면적 (㎡)		소 유 자(당초)		소 유 자(정정)		비 고
	동 명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장수동	617-6	답	5.0	5.0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2	장수동	618-12	답	50.0	50.0	이승후	남동구 만수동 1037 현대아파트 104-1702	정영미 외2	남동구 만수동 1037 현대아파트 104-1702	
3	장수동	618-13	답	46.0	46.0	이승후	남동구 만수동 1037 현대아파트 104-1703	정영미 외2	남동구 만수동 1037 현대아파트 104-1702	
4	장수동	807-7	주차 장	30.5	30.5	이승후	남동구 만수동 1037 현대아파트 104-1704	정영미 외2	남동구 만수동 1037 현대아파트 104-1702	
합 계				131.5	131.5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1337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제37조 위반하여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75조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고 영업주에게 행정처분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공고기간 : 2011.10.28. ~ 2011.11.11.(15일간)
3. 당 사 자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대표자 거주지	소재지	처분명	처분일
일반 음식점	남도-166	우향	전선옥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3번지 6호 1,2층	영업소 폐쇄	2011.10.07.

4. 처 분 명 : 영업소 폐쇄
5. 행정처분일 : 2011. 10. 07.
6. 처분사유 :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7.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위반, 동법 제75조 적용
8. 공시송달 청문일 : 2011. 09. 21. 11:00
9. 유의사항
 - 1)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 해당업소의 영업신고증을 남동구청 식품위생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식품위생과 위생지도팀(☎032-453-26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0. 28.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1-8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구월동 소3-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 구월동 소3-3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변경) 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1. 10. 28.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구월동 소3-3호선)
 - 명 칭 : 구월동 소3-3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변경있음)
 - 당초) B=6m, L=83m, L형옹벽=48.8m
 - 변경) B=6m, L=83m, L형옹벽=64.8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대한예수교 침례회 남인천교회(대표 : 오성균)
 -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43-11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08. 8.29 ~ 2012. 2.2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